제89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어선 위치보고 의무(제9조)(신설) ○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에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, 조업을 할 때에 어선의 위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9조 2. 어획보고, 양륙실적보고 의무 신설(제10조, 제14조)(신설) ○ (어획보고) 연근해어업의 허가등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조업일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실적 또는 전재 실적을 보고 하여야 함 ○ (양륙실적보고) 어선소유자가 포획 및 채취한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양륙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10조,제14조 3. 지정양륙항이 아닌 항만에서 양륙 금지(제12조)(신설) ○ 정부 또는 지자체는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항만, 어항 중 수산자원의 양륙장소를 지정하고 비지정양륙항에서의 수산자원의 양륙을 금지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12조	1.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, 명령 등을 따를 의무 신설(제13조, 제20조)(신설) ○ 어선이 불법어업등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양륙검색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선소유자에게 양륙검색을 위한 사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○ 어업감독공무원은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양륙항, 어선, 그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어선소유자에게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음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13조,제20조 5. 어획확인서 전달 및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 신설(제16조, 제18조)(신설) ○ (어획확인서 등의 전달 및 사용) 어선소유자가 양륙실적 보고를 완료한 경우 위치 및 어획보고 이행 등을 확인하여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, 수산자원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어획확인서를 전달토록 의무화 ○ (어획증명서 제출)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▶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16조,제18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(신설)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최소 출자금 총액(1,000억원)과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액(200억원) 명시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단독 운용이 가능한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납입자본금(20억원 이상)과 상근 전문인력(2명 이상) 요건을 제시 ○ 출자 1좌 금액, 유한책임조합원 수,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, 존속기간 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화 ▶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2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및 관리 기준(신설) ○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○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산정 시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1인으로 산정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비율을 40%로 완화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창업·벤처기업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비율을 60%로 지정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(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, 기관전용, 일반) 출자 허용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자펀드(벤처투자조합) 운용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총액 기준 30% 이내, 자펀드(벤처투자조합) 출자지분 기준 10% 미만 범위에서 허용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부·서류검사 사유에 포함 ▶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,제34조 제35조제37조의2제39조제47조	
3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(신설)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결성계획서 주요 내용을 명시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조합 규약,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체화 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를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명시 ▶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,제2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설(신설) 특례 신청 절차, 특례 기준, 특례 책임보험 기준, 보험 가입증명 및 기간, 미가입시 보상, 손해배상절차, 고지의무, 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▶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, 제8조제9조제10조	1.비중요
5	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9) 제정안 (소방청)	1.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9) 제정(신설) ㅇ 창고시설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함(안 제5조) ㅇ 옥내소화전설비 수원 기준 상향(안 제6조) ㅇ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(안 제7조) ㅇ 비상방송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, 확성기 음성입력을 상향하며, 경보시간을 늘림(안 제8조) ㅇ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하며, 경보시간을 늘림(안 제9조) ㅇ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, 출입구 부근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함(안 제10조) ㅇ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수원 기준 상향(안 제11조) ▶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9) 제5조,제6조제7조 제8조제9조제10조	1.중요